

2024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

연구 유학생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대학에서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연구 활동을 할 외국인 유학생(연구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연구 유학생의 정의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비정규생으로 대학의 학부, 대학원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과정의 수료가 아닌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영리더 프로그램 유학생 및 교원 연수 유학생은 제외한다.)

2. 모집 분야

응모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관련된 분야로 하며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로 한다.
단,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 공관」 이라 함)이 해당 국가별로 특정 모집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부키나 일본 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진료, 수술 등의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과 자국 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아래의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 일본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적 보유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 해 일본 입국 전(수용 대학의 학적 발생 시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인 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선택한 국가, 즉 대한민국 소재의 재외 공관에서 실시한다.
- (2) 연령 : 원칙적으로 1989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단, 문부과학성이 국적국의 제도·사정(병역 의무·전란에 의한 교육 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 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 상황, 가족 사정, 건강 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력 : 일본 대학원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 또는 박사 과정(후기) 중 입학할 희망하는 과정에 필요한 다음의 입학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진 자.(입학 전까지 확실히 이 조건을 충족할 예정인 자를 포함)
 - (a)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
 -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외국 대학, 외국에 있는 학교 중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받은 자.
 - ③ 이 외에 일본의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b) 박사 과정(후기)
 - ① 외국에서 석사 학위 및 전문직 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받은 자.
 - ②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포함) 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그밖에 일본의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c) 박사 과정(의학, 치학, 수의학, 일부 약학 과정)
 - ① 외국에서 18년 과정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 ② 외국 대학, 또는 대학에 상당의 학교에서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받은 자.
 - ③ 외국에서 16년 과정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 대학·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일본의 대학원에서, 일본 대학의 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일부 약학 과정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④ 그밖에 일본의 대학원 박사 과정(의학, 치학, 수의학, 일부 약학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c)의 경우, 예를 들어 ①에서는 최종 과정이 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약학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학별로 학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학에 필요한 학력 조건을 확인할 것.

-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의욕을 가진 자.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며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가진 자.
- (5)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는 데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6) 출발 시기 : 일본 입국 시기는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로 하며 희망하는 일본 입국 시기를 신청서에 기재할 것. 원칙적으로 신청 후 일본 입국 시기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① 4월 학기 :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거주지 출발일도 4월 1일 이후로 한다.
 ② 10월 학기 : 원칙적으로 수용 대학이 정한 그 해의 각 학기 개시일(9월 또는 10월) 전후 2주 사이에 수용 대학이 지정한 날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문부과학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을 무효로 함.
- (7) 비자 취득 :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소재 재외 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로 취득하고, 취득한 「유학」 재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또 선발된 자가 예외적으로 선발 시에 「유학」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재류 중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월의 전월 말일까지 재류 자격을 「유학」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또, 국비 외국인 유학생 신분 종료 후, 다시 「영주자」 또는 「정주자」 등의 재류 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입국 전 결핵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사증 취득 시 반드시 국적국 소재의 재외공관 지시에 따를 것.
- (8) 대상 외 : 다음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발 이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함.
 ① 일본 입국 시 또는 장학금 지급 기간에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는 자.
 ③ 과거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재(학)적 발생 후 포기한 자도 포함). 단, 최종 장학금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월까지 3년 이상의 학업 또는 직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마지막으로 수급한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이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에 한함), 일한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영리터 프로그램 유학생은 제외한다. 또,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제도 중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여기에는 2023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 중 선발 결과가 신청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2024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⑤ 신청 시 이미 「유학」 재류 자격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중인 자, 그리고 자국에서 본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중이거나 재적 예정인 자. 다만,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신청 시에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에 수료하는 것이 확실하고, 재류 자격을 「유학」 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급할 예정인 자.
 ⑦ 「졸업 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⑧ 신청 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전(수용 대학의 학적 발생 시점)까지 일본 국적의 이탈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자.
 ⑨ 일본 입국 후, 「유학」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한 자.
 ⑩ 신청할 때부터 일본 이외에서 장기간의 연구 활동(필드 워크, 인턴십 등)이나 휴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자.
 ⑪ 박사 과정 수료자 중,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⑫ 1차 선고 필기시험에서 시험 감독관이 금지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였거나, 실제로 행한 자.
- (9) 기타 :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해 자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한편,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설문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는 재외 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한다.

4. 장학금 지급 기간

(1) 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경우:

- ① 4월 학기 일본 입국자 :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② 10월 학기 일본 입국자 : 2024년 9월 (주1) 또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이하 「예비 교육」이라 함)이 필요한 자는 상기 ①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장학금 지급 기간의 첫 6개월을 예비 교육 기간으로 한다. 상기 이외에 입국하는 경우는 문부과학성이 별도로 정한다.

(주1)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는 달이 2024년 9월인 경우는 수용 대학의 학기가 2024년 9월 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학기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개시 월이 2024년 10월이 된다.

- (2)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 : 일본 입국 시기와 상관없이, 각각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하, 「표준 수업 연한」이라 한다. 각 과정의 표준 수업 연한은 「13. 진학 및 학위의 취득」을 참조)으로 한다. 예비 교육이 필요한 자는 별도로 6개월간의 예비 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5.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비정규생에서 정규생으로 대학원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자, 혹은 대학원 석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문부과학성의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은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의 정규 과정 시험에도 합격해 진학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 ② 비정규생 신분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③ 연장 신청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에 진학한 자는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 진학 또는 재적하는 것은 가능)

6.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재적하는 과정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 | |
|---------------------|------------|
| ① 예비 교육 기간 및 비정규생 | 월 143,000엔 |
| ② 석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 | 월 144,000엔 |
| ③ 박사 과정 | 월 145,000엔 |

-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단,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합격한 해당 대학의 입학 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3) 여비

- ① 일본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3.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중에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도 수하물 관련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국에 재외 공관이 없어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국에서 일본까지 직항 편이 없는 자의 경우, 제3국 내의 경비와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국에서 경유하는 제3국까지의 항공권 및 제3국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만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지만,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해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으로 상기 「3.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외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종료하고, 상기 「4. 장학금 지급 기간」에 기재된 장학금 지급 기간의 종료 월 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의 도착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 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 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도 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본인 사정 또는 하기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 이전에 귀국할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예: 일본에서 진학, 취직, 지속적으로 대학에 재적할 경우 등)와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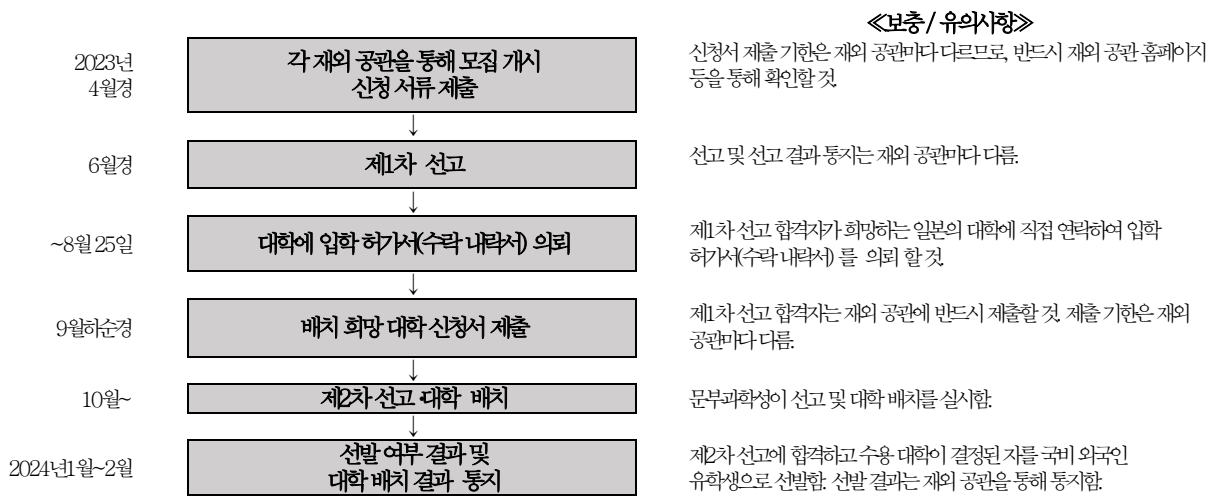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문부과학성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신청 서류에 허위, 부정한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 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에서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 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또는 「유학」 재류 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된 것은 제외) 을 지급받았을 때.
- ⑧ 선발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했을 때.

8. 모집 및 선발 방법

모집부터 선발, 최종 선발 결과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9.~12. 항목을 참조 할 것.



9. 신청 서류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국적국 내 재외 공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종류	원본 1부	사본 2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4년 도관 양식을 사용할 것 (주 4)
②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	○	2024년 도관 양식을 사용할 것
③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	○	○	2024년 도관 양식을 사용할 것 (주 5)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성적 증명서	○	○	출신 대학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것 (주 6)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증명서	○	○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 (주 7)
⑥	재적 대학 또는 최종 출신 대학의 장 또는 담임 교원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⑦	건강 진단서	○	○	2024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주 10)
⑧	학위 논문 개요 등	●	●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사람만 제출 (주 8)
⑨	어학능력 증명서		● (3부)	일본어, 영어 관련 어학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3부 제출. 원본은 필요 없음.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대사관에 신청한 때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주 9)
⑩	현 직장 상사의 추천서	●	●	재직자만 제출. 양식은 자유. 건본 있음.
⑪	작품 사진 또는 연주 녹음 전자 매체 등	●	●	미술·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만 제출할 것

(주 1) ○표기 서류는 제출이 필수이고, ●표기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 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 3) 인쇄 시 신청서 내의 기재란에 누락, 결여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모든 서류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①~⑪까지의 신청 서류 번호(위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류는 반드시 제출서류임

- (주 4)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전용지에 인화한 것으로 크기는 4.5×3.5cm, 상반신, 정면, 탈모한 사진일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과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 파일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함.
- (주 5)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은 대학 배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 분야 및 일본에서의 연구 주제와 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주 6) 신청자의 최종 학력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
- (a) 학부 졸업자- 학부 성적 증명서
 - (b) 대학원 수료자- 학부 및 대학원 각각의 성적 증명서
 - (c) 학부 재적 자- 학부 입학 시부터 신청 시점 학기까지의 성적 증명서
 - (d) 대학원 재적 자- 학부 성적 증명서 및 대학원 입학 시부터 신청 시점 학기까지의 성적 증명서
- 성적 증명서에는 학부, 대학원에서 학년별로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과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단, 학위 취득 증명서와 분모가 불분명하고 단지 몇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했다고 기재된 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다. 대상자 선발 전에 학부 졸업 또는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 7) 신청자의 최종 학력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
- (a) 학부 졸업자- 학부 졸업 증명서
 - (b) 대학원 수료자- 학부 및 대학원 각각의 졸업(수료) 증명서
 - (c) 학부 재적 자- 학부 졸업예정 증명서
 - (d) 대학원 재적 자- 학부 졸업 증명서, 대학원 수료예정 증명서
- 졸업(수료) 증명서는 학위 취득 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학위기 사본으로 대체 가능함(출신 대학 책임자의 확인 증명을 첨부할 것.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졸업증서 및 학위기 원본을 제출하지 말 것). 선발 전에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
- (주 8) 학위 논문 개요 등은 졸업 논문, 발표 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첫 페이지에 반드시 이름을 기재할 것.
- (주 9)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 (주 10) 건강진단서 제출 후, 건강 상태에 변화(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를 포함)가 생긴 경우, 수용 대학 및 일본 의료기관의 수용 체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외 공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

10. 제1차 선고

- (1) 재외 공관에서는 제1차 전형으로 서류 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2) 어학 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반드시 전 과목을 수험할 것. 일본어 시험 결과는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예비 교육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된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영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국적국 재외 공관의 안내에 따를 것.
- (3) 각 선고의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류 심사: 최종 출신 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일 것. 또한,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 ② 어학 필기시험: 일본 대학에서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또는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③ 면접시험: 일본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자일 것.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일본의 지도교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는 상당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일 것.
- (4) 제1차 선고의 결과 통지는 재외 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하고, 선발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선고에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 (5) 제1차 선고의 결과는, 제2차 선고와 대학 배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11. 입학 허가서(수락 내탁서) 및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제출

- (1) 입학 허가서 유무는 최종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입학 허가서를 1곳도 받지 못할 경우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1차 선고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희망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것.
- (2)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제1차 선고 결과 발표 후부터 2023년 8월 25일(금) [일본 현지 시간] 전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과 직접 연락해 대학원의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 허가서, 혹은 수락 내탁서(이하, 「입학 허가서 등」 이라고 함) 발행을

의뢰할 것. 의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신청 서류 No.2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대학은 3개 대학까지만이다. 그러나 취득할 입학 허가서는 최대 2통까지만 한다. 3통 이상 취득하지 말 것.
- ② 일본의 대학에 입학 허가서 관련 의뢰 연락은 최대 2곳의 대학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동시에 3곳 이상 대학과 연락은 취하지 말 것. 다만, 1곳의 대학에서 수용 불가 회신을 받아, 답변 대기 중인 대학이 1곳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1곳의 대학에 추가로 입학 허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2023년 8월 26일(토) [일본 현지 시간] 이후 일본의 대학에 입학 허가서 발행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상기 「2023년 8월 25일(금)」은 대학이 입학 허가서 등을 발행하는 기한이 아니므로, 대학에 회답을 재촉하지 말 것. 단, 회신 예정 시기를 지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함. 또한, 통상적으로 대학의 회신에는 한 달 정도 필요하므로 발행 의뢰 시 계획을 세워 의뢰할 것.
- ⑤ 처음 대학과 연락을 취할 때에는 연구 지도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유학생 담당 부서에 연락할 것(문부과학성에서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제1차 신고 합격자로부터 입학 허가 의뢰 연락이 갈 것이라고 사전에 전달해 두었으므로). 연락처는 재외 공관에서 보관하는 유학생 담당 부서 연락처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⑥ 대학 및 연구자 검색은 재외 공관으로부터 연구자 정보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대학에 입학 허가서 등을 의뢰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 (a)와 (b)를 대학에 직접 제출할 것.

(a) 재외 공관에서 발행한 제1차 신고 합격 증명서 (사본)

(b) 상기 「9. 신청 서류」 중, ①, ③ ~ ⑪(아래 참조)의 각 서류에 재외 공관이 확인 도장을 찍어 반환한 것(사본)

- ① 신청서
 - ③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
 -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성적 증명서
 -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증명서
 - ⑥ 재적 대학 또는 최종 출신 대학의 장 또는 담임 교원의 추천서
 - ⑦ 건강 진단서
 - ⑧ 학위 논문 개요 등 (※재외 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 ⑨ 어학 능력 증명서 (※재외 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 ⑩ 현 직장 상사의 추천서 (※재외 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 ⑪ 작품 사진 또는 연주 녹음 전자 매체 등 (※재외 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그 밖에는 대학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 「②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 것. 기본적으로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이메일(email)로 송부할 것.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도 인정함. 신청 서류 ①, ③ ~ ⑪에 확인 도장이 없거나 서류의 글자 및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차 신고 합격 증명서(사본)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 발행 의뢰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할 것.

(4) 대학으로부터의 회신 현황을 수시로 재외 공관에 보고할 것. 또한, 대학의 회신 현황을 바탕으로 최종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및 취득한 입학 허가서 등을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할 것. 또한 수락 불가라고 회신한 대학은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입하지 말 것(어떤 대학의 연구과에서 '수락 불가'라는 회신이 있었다면, 그 대학의 다른 연구과를 기입하는 것도 불가함).

(5) 일본 입국 시기가 4월, 10월 어느 쪽도 상관없는 자일지라도 대학의 입학 허가서 등에 기재된 일본 입국 시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학에 잘 확인해 볼 것.

12. 제2차선고와 대학 배치

(1) 문부과학성은, 재외 공관의 제1차 선고 결과에 따라 제2차 선고를 실시하고, 수용 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신청자를 수용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2) 대학 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한 제1희망 대학에서 제3희망 대학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배치 협의를 갖고 협의 결과, 대학의 승낙을 얻으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에 국립 대학 및 공사립 대학이 포함된 경우, 수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예산 제약 등에 따라 국립 대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므로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순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대학원 정규 과정의 입학 허가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생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정규 과정에 배치한다.

학위가 수여된다.

15.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해 선발 통지 전후, 언제라도 도일 일정의 변경, 장학금의 취소, 또는 본 모집 요강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이란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재외공관을 포함)의 합리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유로 천재지변,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동일)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감염증에 관한 일본 정부 또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입국 제한 등의 국경 방역 대책을 포함한다), 법률, 규제나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나 지진, 전쟁(선전 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반란, 혁명이나 폭동 또는 파업이나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5. 주의 사항

- (1)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 간 법 제도의 차이, 대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둘 것.
- (2) 입국 후 장학금 수령하기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되므로,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일본 우체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본 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4) 건강진단서의 취득 등을 통해 결핵 등의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일본 입국 전까지 반드시 치료할 것. 그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일본 입국을 불허함.
- (5) 일본 입국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6) 일본 입국 후에는 마이넘버(사회보장번호)카드의 취득을 권장함.
- (7)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수용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② 민간 숙소 등
유학생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나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발된 자는 일본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후에 가족과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선발된 경우,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사후 관리,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 자료 등에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 외국인 유학생을 소개하기 위해 공표할 수도 있다.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될 때, 일본 정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를 통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9) 모집 요강 및 신청 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한다.
- (10) 이 모집 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재외 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11) 이 모집 요강에 정한 내용 이외에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지] 2024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절차 및 선고 일정(연구 유학생·일반 공동 고등 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여 응모할 것. 또한, 모집 요강의 경우 일본어 요강을 기준으로 함.